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916
----------	------

제출일자 : 2021. 8. 2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사유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주차 면적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
- 부지 추가 매입으로 대지면적이 증가(779.1㎡ → 1496.1㎡)하여 심의 요청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

- 건강한 삶의 영위와 개인 행복추구권 증가 등 사회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체육활동 참여 인원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요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위주로 조성된 다사체육공원 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사업 규모 변경 및 현실 단가 적용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총사업비 55억 → 72억)으로 변경 심의 요청

2.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라.『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마.『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변경)

- 사 업 명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
- 위 치 : 옥포읍 기세리 599 외 4필지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711.16㎡ (대지면적 1496.1㎡)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송해기념전시관, 체험실, 하늘정원, 카페 등
- 사업기간 : 2019. 8. ~ 2022. 5.
- 사 업 비 : 2,700백만 원(국 680, 시 336, 군 1,684)
- 변경개요

구분 사업개요		당 초	변 경(안)	증가	비고
위 치	기세리 598	251	251	-	
	기세리 599	440	440	-	
	기세리 523-3	-	717	증 717	추가매입 토지 (지목: 유지)
	기타 (대부, 편입)	88.1	88.1	-	
대지면적(㎡)		779.1	1496.1	증 717	
총사업비(백만원)		2100	2700	증 600 (균비)	

※ 총면적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다사체육공원 내)
- 기 간 : 2018. 11. ~ 2022. 11.
- 규 모 : 부지면적 49,380㎡, 건축연면적 1,885.85㎡, 지하1층/지상2층
 - 지하 1층 - 기계실, 계단실(78.41㎡)
 - 지상 1층 - 다목적 체육시설, 사무실, 샤워/탈의실 등(1,500.09㎡)
 - 지상 2층 - 북카페 라운지, 대여 라커룸 등(307.35㎡)
- 총사업비 : 72억 원(국비 10, 특교세 11, 군비 51)
 - 설계비 2.5억, 감리비 4억, 공사비 65.34억, 시설부대비 0.16억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사업위치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좌 동	
사업기간	2018. 11. ~ 2022. 5.	2018. 11. ~ 2022. 11.	
사업규모	연면적 2,350㎡,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1,885.85㎡ 지하1층/지상2층	감) 464.15㎡
총사업비	55억 원	72억 원	증) 17억 원
시설용도	다목적 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창고	다목적 체육시설, 사무실, 샤워/탈의실, 북카페 라운지, 대여 라커룸, 다목적실	

※ 총사업비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설계비	250	250		-
공사비	6,534	2,250	4,284	-
감리비	400		400	-
시설부대비	16		16	-
계	7,200	2,500	4,700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 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전수 (필지)	수량	금액	전수 (필지)	수량	금액	전수 (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10 (11)	75,796.68	95,321,932	2 (1)	2,602.85	7,293,263	12 (12)	78,399.53	102,615,195
	토지	3 (10)	49,127	1,102,389	1 (1)	717	93,263	4 (11)	49,844	1,195,652
	건물									
	토지	1 (1)	618	800,310				1 (1)	618	800,310
	건물	1	185.78	15,233				1	185.78	15,233
	토지									
처분	3.기타	5	25,865.9	93,404,000	1	1,885.85	7,200,000	6	27,751.75	100,604,000
	건물	2 (1)	3,156.1	2,505,407				2 (1)	3,156.1	2,505,407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1 (1)	1,484	1,576,008				1 (1)	1,484	1,576,008
	건물	1	1,672.1	929,399				1	1,672.1	929,399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1	임야	임야	화원읍	평곡리	931	18,105	18,105	143,210,550	화원 명곡 산림육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01-3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원교회 대표자 신용기
2	임야	임야	화원읍	평곡리	931-1	7,980	7,980	53,625,600			
3	임야	임야	화원읍	평곡리	909-1	19,834	19,834	137,052,940			
4 (건물)	부지 시설	부지 시설	논공읍	금포리	1805-1	1,400	1,400	4,294,000,000 (건축비)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805-20						
					1805-21						
					1805-22						
					1805-24						
					1805-25						
					1805-26						
					1805-27						
					1805-28						
					1805-35						
					1805-36						
					1805-37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주	소	
5 (공작물)	종교 용지	종교 용지	현풍읍	성하리	464	1식	1,900,000,000 (사업비)	2022. 2.	층흔탐 정비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층흔탐 재건립
6	대	대	논공읍	남리	271	271	87,641,400	2021. 2.	논공 남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54, 109동 802호	안에란	
7	대	대	논공읍	남리	272	304	95,456,000					
8	대	대	논공읍	남리	273	410	128,576,000					
9	전	전	논공읍	남리	274	157	50,616,800					
10	대	대	논공읍	남리	267	605	189,970,000					
11	답	답	논공읍	남리	359	241	77,770,700	2021. 2.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23, 105동 1901호	유태형	
12	답	답	유가읍	가태리	572-1	1,220	138,470,000					
13 (건물)	대	대	옥포읍	교항리	2961	495	1,800,000,000 (사업비)	2021. 9.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3층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증축

연번	지 목		제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14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54-4	618	618	800,310,000	2021. 6.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경북지방우정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구. 회원 우체국
15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54-4	185.78	185.78	15,233,960						
16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1553	5,113.9	5,113.9	19,000,000,000 (건축비)	2023. 7.	달성북부권 복합행정 시설 조성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17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26-1 445-2 446-2 447-1 448-2	18,856	18,856	66,410,000,000 (건축비)	2024. 6.	달성군 회원공공 복합청사 리뉴얼사업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처분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주	소	성 명	
계													
1	대	대	현풍읍	원교리	93-1	1,484	3,156.1	2,505,407,200					구. 달성군 보건소
2 (건물)	대	대	현풍읍	원교리	93-1	1,672.1	1,484	1,576,008,000	2021. 6.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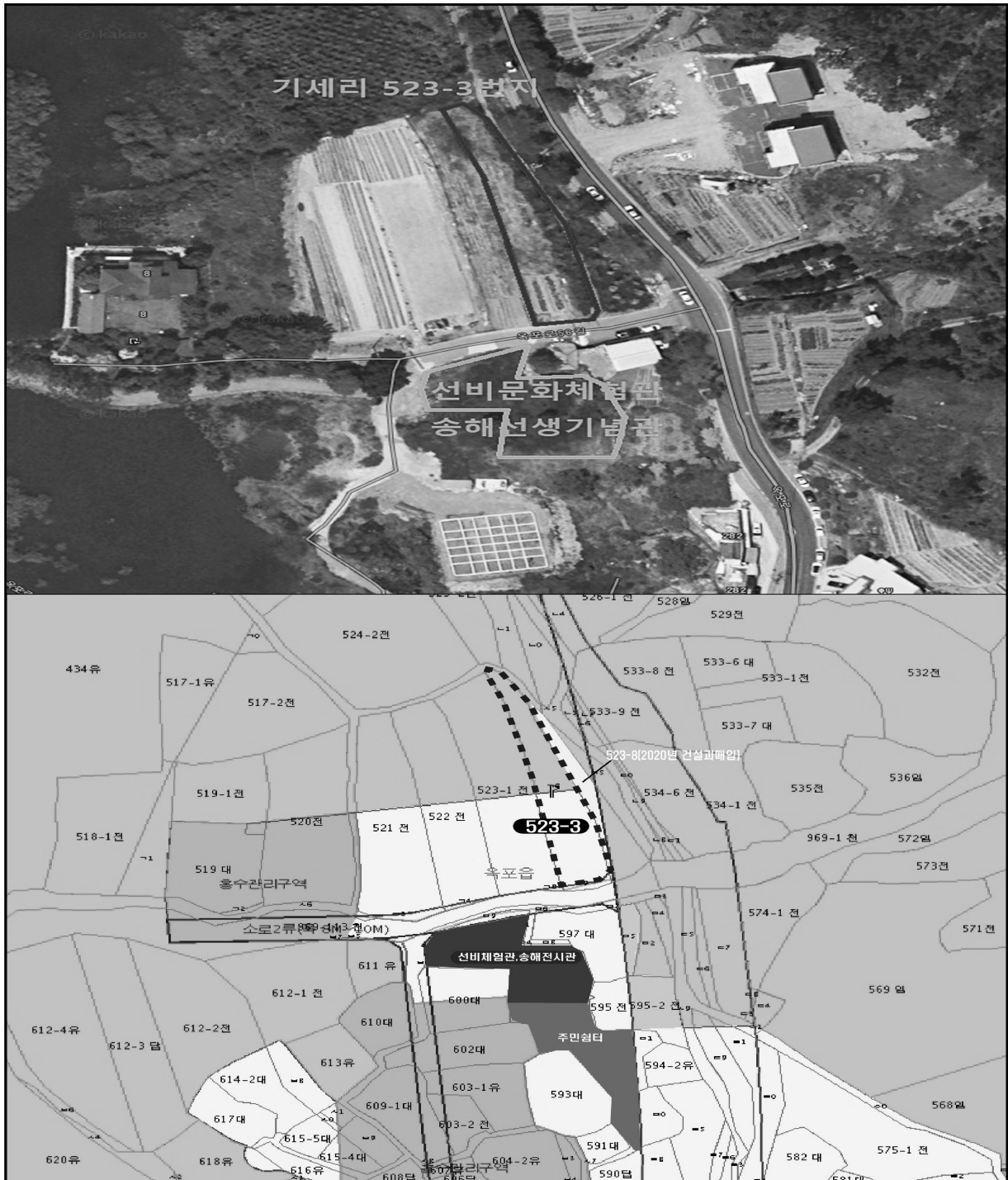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정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총 계			토지(1필지), 건물(1동)		2602.85	7,293,263,500					
토지	유지	유지	옥포읍	기세리	523-3	717	2021.10.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 공사	비교표준지: 옥포읍 기세리 608 (제1종일반주 거지역) 옥포읍 기세리 755(개발제한구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9,393,500원 (170,500원×407㎡) 개발제한구역 23,870,000원 (77,000원×310㎡) 합계: 93,263,500원					
건물	답	전 답	다사읍	달천리	132-1 135 136	1,885.85	2021.11.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농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7,200,000,000					

위 치 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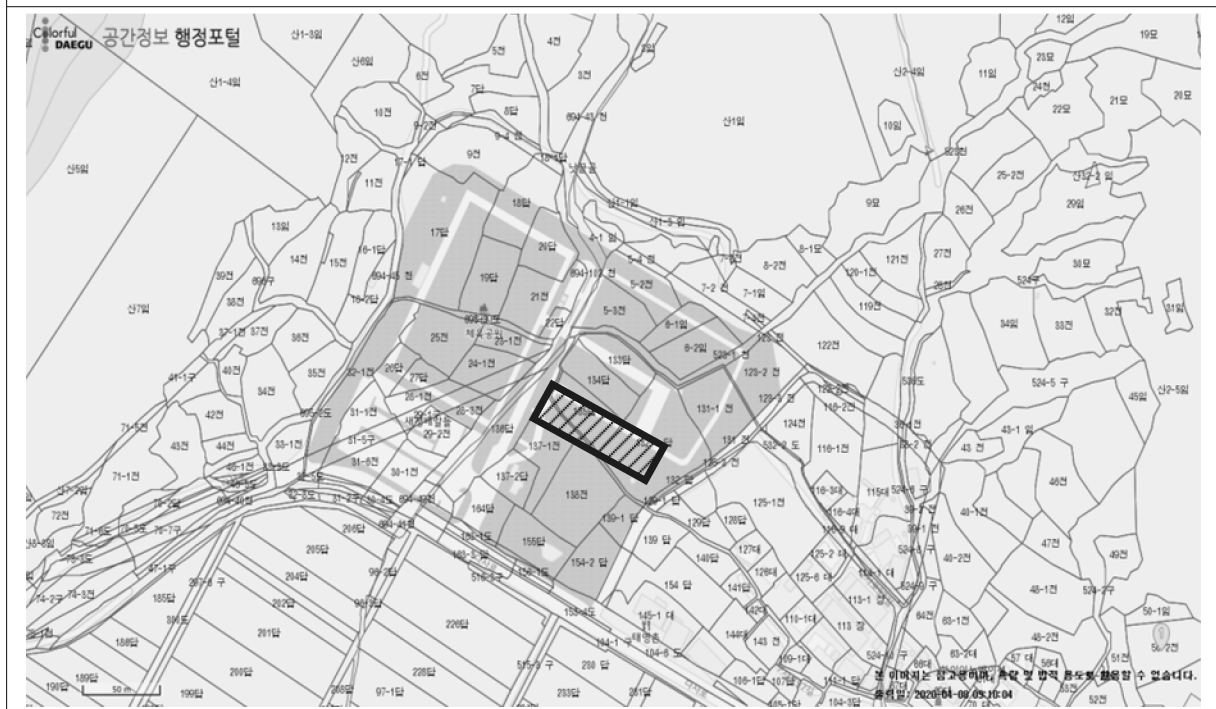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위 치 도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조 감 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